



감사위원회의 권한

2024.07.25

감사위원회의 권한

실효성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상법, 외부감사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서 명시한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자 함

유형	상법	외부감사법	금융사 지배구조법
I. 업무 및 회계 감독권한	✓	✓	
II. 주요 보고 수령	✓	✓	
III. 외부 자문비용 지원 요청	✓	✓	✓
IV. 외부감사인 선정		✓	

*그 외, 소제기권과 대표권,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의 권한이 존재
(자세한 사항은 삼정KPMG ACI audit committee handbook p104~116 참고)

감사위원회의 권한

I. 업무 및 회계 감독권한

업무 및 재산 조사권(상법 제412조 2, 제412조 5)

1) 감사위원회

회사의 업무상황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해 언제든지 조사
주로 장부나 서류, 재산 등에 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

2) 모회사의 감사위원회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 진행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요구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함

정기적인 감사보고(상법 제447조 3)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결산감사를 위해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수령
이 때에도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요구 가능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제391조 2)

이사의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은 이를 유지(중단)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

위반사실조사 및 시정 요구권(외부감사법 제22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

감사위원회의 권한

II. 주요 보고 수령과 외부 자문비용 지원 요청

보고수령

조항	내용	
상법 제412조	이사 보고 요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가능
	이사 보고 수령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 발견 시,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
외부감사법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회사의 대표자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외부 자문 비용 지원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직무수행 상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 제415조 2, 제447조 4 / 외부감사법 제22조 /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0조)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뜻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

III. 외부감사인 선정 등

외부감사인의 선정(외부감사법 제10조 4)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직접 선정

외부감사인 선정내용 문서화(외부감사법 제10조 5)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문서화

전기외부감사인 평가(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

- 1) 전기외부감사인이 합의한 감사시간 · 인력 · 보수 ·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 2) 전기외부감사인이 외부기관 자문을 요구한 경우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와의 협의 내용
- 3) 감사위원회와 전기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등

감사보고서의 수령(외부감사법 제23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 포함 회사·증권선물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